

의안번호	2210915
의 퇴 인	박용갑의원
회 답 일	2025.7.1.
추계번호	25B329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5 신설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도로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이하 “대규모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등은 대규모 행사 기간 동안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제2항) 1. 특별교통수단의 증차 및 운행 확대 2. 대규모 행사 지역 내 저상버스 운행 및 교통약자 우선 승차 시스템 운영 3.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위한 조치 4. 병원,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임시 교통수단 배치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16조의6 신설 (대규모 행사 시 필수시설 접근 보장)	국가등은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교통약자의 병원·약국·응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필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등은 대규모 행사 기간 중 교통약자의 필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제2항) 1. 필수시설과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비상통행로 확보 2. 필수시설 이용객을 위한 임시 주차구역 또는 하차 지점 지정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방안 및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6조의5 신설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6조의6 신설 (대규모 행사 시 필수시설 접근 보장)	

2. 상세사유

- (안 제16조의5 신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증차 및 운행 확대, 저상버스 운행 및 교통약자 우선 승차 시스템 운영,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조치, 병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행사장 간의 임시 교통수단 배치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책 마련 및 관련 조치의 시행이 필요한 대규모 행사의 정의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 대규모 행사의 개최 장소, 기간, 참여가 예상 되는 교통약자 수 등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이동권 보장 대책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계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16조의6 신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교통약자의 필수시설(병원·약국·응급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수시설과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비상통행로 확보, 임

시 주차구역 또는 하차 지점 지정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필수시설의 위치, 대규모 행사장과의 거리, 비상통행로의 확보 가능 여부 등은 대규모 행사 개최 지역의 여건과 행사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조치의 시행방안과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추계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II.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